

제주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합110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전 문

원고 주식회사 다◇◆앤디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제주지방법원 2016. 3. 28. 접수 제353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은 제주지방법원 2014. 10. 30. 접수 제955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0. 30. 원고에게서 주식회사 성▽전력(이하 '성▽전력'이라고 한다) 앞으로 2014.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성▽전력이 2016.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2. 청구금액 2,000만 원, 채권자 피고 B, 등기원인 이 법원 2016. 4. 11.자 가압류결정(2016카단10167)으로 하는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C, D이 이 법원 2015가합1048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성▽전력 사이 매매계약의 기초가 되는 2014. 10. 29.자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신주발행무효확인 등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2016. 4. 21. 그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가 2016. 6. 24. 성▽전력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제주신용협동조합과 피고 A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B과

압류등기를 마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와 성▽전력 사이에는 성▽전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제주신용협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원고가 제주신용협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마친 피고 B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현석 판사 황미정 판사 정승진

부동산의 표시

1. 제주시 E 전 993㎡
2. F 전 2,899㎡
3. G 전 2,942㎡
4. H 전 3,273㎡. 끝.

